

옥천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9일

옥 천 군 수

1. 조 례 명 : 옥천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2. 제 정 이 유

- 「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가족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.

3. 주 요 골 자

-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센터) 목적, 명칭 및 설치(안 제1조~제2조)

- 센터의 기능 및 조직(안 제3조~제4조)
-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5조~제7조)
- 센터의 위탁운영 등(안 제8조)
- 다른 조례의 폐지: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폐지(부칙 안 제2조)

4. 제 정 근 거
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

5. 의 견 제 출

- 「옥천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주민복지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333, FAX : 043)731-1985

- 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6. 붙 임

- 옥천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
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① 센터의 명칭은 옥천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조(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
2.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3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
4.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
5.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,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

제5조(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센터, 경찰서,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대표자
2. 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
4. 가정문제,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3.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,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탁운영 등) ① 군수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5항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2항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지원)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」를 폐지한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 례 명 : 옥천군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건